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시행규칙 개정 및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안 부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26년 1월 1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u>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 <u>공포 후 1년</u> <u>이 경과한 날</u>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4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한정애 · 조계원 · 조인철
주철현 · 남인순 · 문진석
송기현 · 이병진 · 송재봉
박홍근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부칙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안 부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